

韓非의 術論 研究

김 영 태

1. 研究의 方向

본 논문은 戰國後期 法家의 집대성자인 韓非의 사상을 그의 術論을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韩非의 사상은 商鞅의 法, 申不害의 術, 慎到의 勢를 종합한 것으로 흔히 이해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 韩非 사상 이해의 핵심으로서 주로 그의 術論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韩非 立論의 핵심이 君權의 강화와 臣權의 견제 이론인 術論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

法家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韩非는 당시의 다른 학파들과는 달리 사회 혼란의 주요 원인을 大臣들의 君權 壓迫 내지는 政權 奪取의 빈발로부터 찾고 있다.²⁾ 따라서 韩非의 주된 비판의 대상은 儒家였다. 왜냐하면 韩非 생존 당시에 儒家의 이론은 仁治(人治)를 통해 君主에게 솔선수범에 의한 도덕적 교화를 요구하면서 君權을 제한하는 논리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儒家의 이론상 仁治는 君主에게 뿐만 아니라 동시에 臣下에게도 역시 요구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결국 臣下에

1) 『韓非子』 전체의 내용 중 術에 관한 논의가 전체 논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郭沫若, 『中國古代思想史』(原題: 十批判書), p.444.

2) 『韓非子』 「孤憤」3 “今有國者，雖地廣人衆，然而人主壅蔽，大臣專權。” 이후로 『韓非子』를 인용할 경우 篇名만을 기재.

의한 人治(仁治)의 영역을 확보 가능케 함으로써, 통치에 있어서는 惠民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儒家의 仁治論은 결과적으로 臣下에 의한 惠民을 가능하게 해주는 논리로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韓非는 儒家의 仁治論을 山下가 山上와 爭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논리로 파악함으로써³⁾ 戰國시대에 막강한 臣權⁴⁾ 強化의 이론으로서 작용한 儒家의 理論을 비판하게 된다. 반면에, 法家는 法治와 術治를 기본 통치 철학으로 설정하는 지배 논리의 관철을 통해 君權을 강화하고 特權 貴族의 臣權을 약화시켜 富國強兵과 君主 통치권의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法家 이론은 지배 계층의 피지배 계층에 대한 가혹한 통치론으로 흔히 이해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韩非에 있어서는, 지배 계층 내부에서의 君權과 臣權의 대립 과정에서 君權의 臣權에 대한 제압이 피지배 계층에 대한 지배 계층의 통치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韩非 術論의 성립 동기와 그 이론의 정당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韩非가 제안한 法術 이론이 과연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논리로 구성되

3) 「八說」1, “以公財分施, 謂之仁人. ... 行惠取衆, 謂之得民. ... 得民者, 君上孤也.”

4) 앞으로 계속 언급하게 될 臣權은 주로 君權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강대해진 特權 貴族을 의미한다. 이 特權 貴族은 현실적으로 君主의 親姻戚이거나, 君主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측근(左右)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韓非子』내에서 重人, 姦臣, 姦吏, 亂臣, 大臣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八姦」篇에는 姦者에 대한 분류가 나타나 있는데, 첫째, 同牀(貴夫人이나 婢妾) 둘째, 在旁(광대나 시종) 세째, 父兄(側室 公子) 네째, 養殃(君主의 사치를 조장하는 臣下). 다섯째, 民萌(여론을 선동해 사욕을 채우는 臣下) 여섯째, 流行(辯士를 이용해 私의 利益을 도모하는 臣下) 일곱째, 威強(무력으로 君主를 위협하는 臣下) 여덟째, 四方(외국의 힘을 빌어 君主를 위협하는 臣下)를 들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열거된 姦者 중에는 백성이 없다는 점이다.

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하여, 韓非의 사상중 그의 術論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韩非의 法術 이론이 利民을 위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法家의 重刑主義의 본래 주된 의미는 多刑主義가 아니라 기준의 特權 貴族에 대한 엄격한 형벌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嚴刑主義⁵⁾임을 밝힐 것이다.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韩非 術治 이론의 주 목적은 “禮는 庶人에 미치지 않고, 刑罰은 大夫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⁶⁾는 원칙의 과거를 통해, 즉 臣도 형벌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⁷⁾ 기준의 特권세력(重臣)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다. 결국 法家에 의한 儒家 비판의 실체는 지배계층 내부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法家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法家 이론은 지배 계층의 피지배 계층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대명사로서만 파악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지배계층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이론 투쟁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그런데 韩非의 儒家 비판은, 적어도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儒家の 仁義論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仁治 실현의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⁸⁾, 다른 한편으로는 仁治를 빙자한 肇臣들의 君主權 侵害에 비판의 초점이 놓여 있다.⁹⁾.

5) 「有度」5, “刑重, 則不敢以貴易賤.” 여기서의 重의 의미는 백성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력가들에게까지 형벌을 엄밀히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6) 『禮記』, 「曲禮上」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

7) 「有度」5, “刑過, 不避大臣, 賞善, 不遺匹夫.”

8) 「五蠹」4, “民者, 固服於勞, 寡能懷於義. 仲尼, 天下聖人也. 修行明道以游海內, 海內說其仁, 美其義, 而爲服役者七十人. 蓋貴仁者寡, 能義者難也. 故以天下之大, 而爲服役者七十人, 而仁義者一人. ... 今學者之說人主也, 不乘必勝之勢, 而曰: 「務行仁義, 則可以王.」是, 求人主之必及仲尼, 而以世之凡民蓋如列徒, 此必不得之數也.”

9) 「八弊」1, “爲人臣者, 散公財以說民人, 行小惠以取百姓, 使朝廷市井蓋勸譽已, 以塞其主, 而成其欲.”

2. 法術이론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人性論

孟軻로서 대표되는 儒家의 人性論은 중앙정부의 君主의 독단을 막고 지방의 봉건귀족들의 자율적인 통치 영역을 확보하려는 테 필수적이다. 그것에 반해 法家는 重臣들의 越權的 行爲를 막아 君主의 강력한 통치력의 확보를 위해 人性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했다.

그래서 韓非의 人性論은 그의 모든 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韓非子』내의 人性에 대한 언급은 『孟子』나 『荀子』에서와 같이 어느 한 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여러 편에 산재되어 나타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安利를 추구하고 危害를 피하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¹⁰⁾

“百姓의 본성은 수고로운 것을 싫어하고, 편안한 것을 즐긴다. 편안하게 되면 황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면 다스려지지 않는다.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지러워져서, 賞罰을百姓에게 시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막힌다.”¹¹⁾

이상에서 인간의 본성이 형벌에 의해서 계도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한비의 인성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事實이 되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賞罰제도에 의한 통치는 當爲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자연히 臣權을 약화시키고 君權을 강화시키는 지배논리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형벌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정당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이 본성상 싫어

10) 「姦劫弑臣」1, “夫安利者就之, 危害者去之, 此人之情也.”

11) 「心度」2, “夫民之性, 惡勞而樂佚. 佚則荒, 荒則不治. 不治則亂, 而賞罰不行於下者必塞.”

하는 형벌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면 그것을 합리화할 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韓非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서 합리화하고 있다.

“(머리에 종기가 난)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다시 아프게 되고, 종기를 터드리지 않으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종기를 터트리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잡고, 어머니가 치료해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는 오히려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그것은 조그마한 아픔을 참으면 큰 이익에 이를 수 있음을 그 어린아이가 모르기 때문이다.”¹²⁾

여기에서 형벌의 시행이 장기적으로는 결국百姓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옴을 근거로 형벌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논리는 『韓非子』내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¹³⁾. 통치자는百姓들의 욕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百姓들의 이익을 내다 보고 통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음의 표현에서 더욱 명확하다.

“성인이百姓을 다스릴 때에는, 근본을 해아려서,百姓들의 욕구를 모두 쫓지는 않고,百姓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기대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百姓들에게 형벌을 부여하는 것은百姓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가만히 생각컨대, 法術을 세우고 度數를 설치하는 것은

12) 「顯學」10, “夫嬰兒不剔首則復痛，不副座則寢益。剔首副座，必一人抱之，慈母治之，然猶啼呼不止，嬰兒不知犯其所小苦致其所大利也。”

13) 「心度」2, “聞古扁鵲之治甚病也，以刀刺骨。聖人之救危國也，以忠逆耳。刺骨，故小痛在體，而長利在身。拂耳，故小逆在心，而久福在國。故甚病之人，利在忍痛。猛毅之君，福以拂耳。”「六反」4 “法之爲道，則前苦而長利。仁之爲道，則偷樂而後窮。”

14) 「心度」1, “聖人之治民，度於本，不從其欲，期於利民而已。故其與之刑，非所以惡民，愛之本也。”

百姓을 이롭게 하고 대중을 편하게 하기 위한 道이다. 그러므로 혼란하고 어두운 君主로부터의 환난을 피하지 않고, 반드시 百姓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仁智의 行이다.”¹⁵⁾

이것은 『孟子』의 첫장에 나오는 仁義政治論과는 전적으로 대립되는 사고이다. 여기서 韓非는 仁義를百姓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재정의함으로써 孟軻가 강조한 仁義와 利 사이의 대립적인 파악을 부정하고 있다.¹⁶⁾

-
- 15) 「問田」2, “竊以爲立法術，設度數，所以利民萌，便衆庶之道也。故不憚亂主闇上之患禍，而必思以齊民萌之資利者，仁智之行也。”
- 16) 이것은 仁義 자체와, 仁義를 주장하면서 월권을 행하는 重臣들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儒家의 仁義論에 대한 韓非의 태도와는 구별된다. 韓非 역시 仁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백성에 대한施惠를 통해, 즉 그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줌으로써 성취하고자 하였고, 또한 철저히 그 仁政의 주체를 臣下들이 아닌 君主로서 제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韩非는 仁義를 백성을 이롭게 해주는 것으로 과악함으로써, 仁義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問田」2 “竊以爲立法術，設度數，所以利民萌，便衆庶之道也。故不憚亂主闇上之患禍，而必思以齊民萌之資利者，仁智之行也。” 단지 韩非가 문제 삼는 것은 그 仁義施惠 자체가 아니라 그 仁義施惠의 주체이다. 韩非는 惠民의 주체는 君主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韩非는 臣下가 순수한 의도가 아닌, 君權탈취의 목적하에서 백성에게 시혜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더 확대되어 儒家 일반에 대한 비판에까지 이르는 동기가 되었다. 「八姦」2 “其於德施也，縱禁財，發墳倉，利於民者，必出於君，不使人臣私其德。” 「八經」8 “明主之道，臣不得以行義成榮，不得以家利爲功。功名所生，必出乎官法。” 이것은 仁義를 빙자한 臣下들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결국 韩非의 관심은 월권을 행하는 臣下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에 있다. 한편 孔丘는, 孟軻가 仁義와 利의 대립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 반면에, 仁과 利民을 전적인 모순 관계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論語』 「雍也」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何如？可謂仁乎？」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堯舜，其猶病諸。」”

이상과 같이 法家의 이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利民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君主는 利民을 위해 賞罰을 시행하는 존재로서 부각되며, 아울러 臣權 제압에 필요 한 명분과 근거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韓非의 功利主義에 君主를 정점으로 하는 독재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론 합리화의 최종적인 근거는 民利를 착취하는 臣下들을 君主가 효율적으로 제어함으로써 民利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術論 分析

1) 術의 含意와 性格

韓非는 기존의 法派와 術派의 이론을 종합하여 法家의 집대 성자로 평가받게 되었으나,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법가에 의해 비교적 뒤늦게 수용된 術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法과 術을 종합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術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파악은 韓非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君主에게 있어 術과 法이 모두 필수적인 통치 수단이기는 하지만, 君主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의 적용대상인 百姓들로부터 받는 위협보다는 臣下들로부터 받는 통치권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君權 强化를 지향하는 韩非의 입장에서는 術에 대한 언급에 더 비중이 두어질 수밖에 없다.

韓非의 術은 法과의 대비를 통해 규정되고 있다. 먼저 『韓非子』에 나타난 法, 術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術은 君主가 장악해야 하는 것이고, 法은 관리가 집행 해야 하는 것이다.”¹⁷⁾

17) 「說疑」1, “凡術也者，主之所以執也。法也者，官之所以帥也。”

“君主의 중요한 통치수단은 法이 아니면 術이다. 法이란 문서로 만들어 공개하고, 官府에 설치해서 百姓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術이란 君主의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 단서들을 대하여 은밀히 群臣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은 드러내 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術은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明主가 法을 말하면 境內의 百姓들 중에 듣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든 百姓이 다 알게 된다. 術을 사용하면 측근의 臣下들이 君主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어 아무도 君主의 의중을 모르게 된다.”¹⁸⁾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君主와 臣下의 관계는 術로, 臣下와 百姓의 관계는 法으로 매개시킴으로써, 法과 術에 있어서 그 적용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法은 臣下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術은 法을 大臣들에게까지 적용시키려는 기도의 일환일 뿐이다. 그리고 術은 최종적으로 君主의 臣下에 대한 賞罰權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君主와 臣下는 서로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韓非의 術論은 출발한다. 戰國시대 당시에 臣下가 君主를 시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일은 頻發했으므로, 왕권을 옹호하는 韓非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臣下와 君主의 이익이 달辱을 아는 자는 王이 되고, 같다고 여기는 자는 制壓을 당하고, 國事를 함께 하는 자는 犯害를 당한다. 그러므로 賢明한 君主는 公私의 구별을 살피고, 利害의 所在를 구별하여, 羣臣이 이용할 바가 없게 한다.”¹⁹⁾

18) 「難三」8, “人主之大物，非法則術也。法者，編著之圖籍，設之於官府，而布之於百姓者也。術者，藏之於胸中，以遇衆端，而潛御群臣者也。故法莫如顯，而術不欲見。是以明主言法，則境內卑賤莫不聞知也，不獨滿室。用術，則親愛近習莫之得聞也，不得滿室。”

19) 「八經」3 “知臣主之異利者，王。以爲同者，劫。與共事者，殺。故明主審公私之分，別利害之地，姦乃無所乘。”

“人臣은 그 君主와 骨肉至親이 아니다. 勢에 묶여 君主를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있을 뿐이다.”²⁰⁾

君臣은 이해 관계를 명백히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君主는 항상 臣下를 잘 파악하고, 정권 탈취에 경계해야만 한다. 君主가 術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臣下에게 제압당하고, 그 결과로 君主가 장악하고 있어야 할 權勢가 臣下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君主는 한시도 臣下를 신임해서는 안된다.

“申子가 말하기를: 「君主가 현명함을 드러내면 臣下들은 그것에 대비하고, 현명하지 못함을 드러내면 臣下들은 그를 미혹시킨다. 지혜를 드러내면 臣下들은 그를 美化하고, 지혜롭지 못함을 드러내면 臣下들은 그를 무시한다. 無欲함을 드러내면 臣下들은 그를 엿보고, 有欲함을 드러내면 臣下들은 그를 誘引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는 따라서 臣下들의 肆邪함을 모두 알 수 없다. 오직 無爲하여야 그들을 살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²¹⁾

“君主가 좋고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면 臣下가 그것을 이용하여 人主가 미혹된다.”²²⁾

하지만 君主 일개인이 모든 臣下를 독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독책의 대상이 되는 臣下는 君主의 측근에서 君主를 위협하고, 君權을 천단하는 重臣, 權臣, 肆臣들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²³⁾ 그러므로 術을 사용해 견제해야 하는 臣下들은 臣下一般이 아니라, 군권을 위협할 정도의 소수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사실상 君主는 臣下들

20) 「備內」1, “人臣之於其君，非骨肉之親，縛於勢而不得不事也。”

21) 「外儲說右上」14, “申子曰:「上明見，人備之。其不明見，人惑之。其知見，人飾之。不知見，人匿之。其無欲見，人司之。其有欲見，人餌之。故曰:「吾無從知之，惟無爲可以規之.」」

22) 「外儲說右上」2, “好惡見，則下有因，而人主惑矣。”

23) 「孤憤」5, “萬乘之患，大臣太重。千乘之患，左右太信。此人主之公患也。”

의 도움 없이는 통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君主가 臣下 일반을 적대시해서는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君主와 臣下는 利害를 달리 하지만 그러나 통치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臣下 일반을 적대시하는 이론은 스스로 君主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術이 사용되는 대상은 주로 특권貴族勢力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法家의 術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法家의 術이 君主獨裁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책략술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히『老子』에서 엿보이는 政治 技術로서의 無爲思想을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그러나 術을 君主 일개인이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은밀히 진행시키는 사악한 음모와도 같은 것으로 일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일정한 이해의 한계를 지니게 됨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戰國시대 당시의 君主의 중앙집권에 대한 시도는 결코 君主 일개인의 利害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法家의 주도하에 시도되었던 君主 중앙집권은 君主의 중앙집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의 파워 계임의 양상으로서 나타난 것이지, 君主 일개인과 臣下 일반의 대립이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해서 術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군주가 術로써 견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

“臣下가 명령을 따라 政事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자신
의 임무를 처리하면 이른바 重人이 아니다. 重人이란 명령
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위하고 공공의 法을 파괴하여 개인
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재정을 소모하여 자신의 私家
를 이롭게 하고, 그 君主의 힘을 얻는자이다. 이것이 이른

24) 「難二」4, “夫一匡天下，九合諸侯，美之大者也。非專君之力也，又非
專臣之力也。... 凡五霸所以能成功名於天下者，必君臣俱有力焉。”

바 重人이다.”²⁵⁾

좀더 정확히 말하면 術을 통해 제어되는 대상은 주로 개혁에 반대하는 重臣들에 한정된다.²⁶⁾ 결국 術은 法術之士와 重人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시에 기능하고 있었다.²⁷⁾ 철저한 信賞必罰에 입각한, 능력과 업적을 위주로 한 관리선발 원칙²⁸⁾과 不兼官, 不兼事의 원칙²⁹⁾에의 충실은 상대적으로 君主가 術을 사용할 계기를 주지 않는 것이 된다. 관리들로 하여금 철저한 分職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君權에의 위협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術이 지향하는 이상적 상태이다.

“君主를 천단하는 臣下가 있으면, 임금의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지 않고, 臣下의 사정이 위로 통하지 않게 된다.一人의 힘으로 君臣간의 사이를 막아, 좋고 나쁜 일이 君主에게 들리지 않게 한다.”³⁰⁾

-
- 25) 「孤憤」1 “人臣徇令而從事，安法而治官，非所謂重人也。重人也者，無令而擅爲，虧法而利私，耗國而便家，力能得其君，此所謂重人也。”
- 26) 개혁에 찬성하는 臣下는 당연히 韓非의 입장에서 忠臣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忠臣은 개혁된 법의 집행에 충실한 臣下이며, 特權貴族 세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忠孝」2, “故人臣母稱堯舜之賢，母譽湯武之伐，母言烈士之高，盡力守法，專心於事主者，爲忠臣。” 「忠孝」1, “夫所謂明君者，能畜其臣者也。所謂賢臣者，能明法辟，治官職，以戴其君者也。” 「外儲說右上」3, “術之不行，有故。不殺其狗，則酒酸。夫國亦有狗，且左右皆社鼠也。” 「和氏」2, “主用術，則大臣不得擅斷，近習不敢賣重。”
- 27) 「人主」2, “明主者，推功而爵祿，稱能而官事。所舉者必有賢，所用者必有能。賢能之士進，則私門之請義止矣。… 今近習者不必智，… 其當途者不必賢。”
- 28) 「難一」3, “卑賤不從尊貴而進，大臣不因左右而見。” 「說疑」3, “明主不羞其卑賤也，以其能爲可以明法便國利民，從而舉之。” 「顯學」5, “明主之吏，宰相必起於州府，猛將必發於卒伍。”
- 29) 「難一」3, “明主之道，一人不兼官，一官不兼事。”

“君主가 자신의 몸이 위태롭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까닭은 大臣이 지나치게 귀하고, 左右의 측근들이 지나치게 위세를 떨치기 때문이다. 이른바 貧하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여 권력을 잡고 私的 利益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른바 威勢를 떨친다는 것은 權勢를 빌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은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³¹⁾

“나라를 어지럽히는 臣下는 반드시 重人이다. 重人은 반드시 임금이 깊이 친애하는 사람이다.”³²⁾

“重人은 능히 私를 行하는 자이다. 私를 행하는 자는 法을 위반하는 자이다.”³³⁾

이상에서 君主가 術을 사용해 경계해야 할 臣下들은 일반 臣下들과 君主 사이를 격리 시킬 뿐만 아니라, 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주체들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術을 통해 제어해야 하는 대상이 주로 特權 貴族이었다는 사실은 이외에도 『韓非子』내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포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君主가 術을 사용해야만 하는 정당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 혼히 法家의 術은 君主의 獨裁政治를 강화하기 위한 君主南面之術로 이해되어 왔으나, 『韓非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강화되어 있는 君權을 더욱 강화해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攻勢的 입장으로서 術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臣權에 짓눌린 君權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守勢的 입장에서 術을 언급하고 있다. 韓非의 입장에서 보면 君主의 術의 사용은 도리어 臣下 獨裁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당시에 百姓을 수

30) 「難一」3, “有擅主之臣，則君令不下究，臣情不上通。一人之力，能隔君臣之間，使善敗不聞。”

31) 「人主」1, “人主之所以身危國亡者，大臣太貴，左右太威也。所謂貴者，無法而擅行，操國柄而便私者也。所謂威者，擅權勢而輕重者也。此二者，不可不察也。”

32) 「外儲說右上」29, “亂臣者，必重人也。重人者，必人主所甚親愛也。”

33) 「外儲說右上」25, “重人者，能行私者也。夫行私者，繩之外也。”

탈한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君主 一個人의 힘으로百姓 전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탈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戰國시대의君主는 중앙집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명목상의 왕에 불과했으므로,³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강력한 정치 권력을 소유한 特權 貴族이었다. 韓非는 이重人을君主의 적인 동시에百姓의 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래로는百姓들을 착취하고, 위로는君主를 속이기 때문이다.

“薄疑가 趙簡主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나라는 중간(臣下 階層)만이 배부릅니다.」 簡主가 (이 말을 오해하여)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어떠하다는 것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위로 나라의 창고는 비어 있고, 아래로百姓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豪吏는 부유합니다.」”³⁵⁾

“지금의君主의 측근들은, 나가면 권세를 이용하여百姓들로부터 이익을 갈취하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서로朋黨을 지어君主에게 자신들의 惡을 감춘다. 안으로君主의 실정을 이간질하여 밖에 고하여, 안팎으로重하게 되어 여러臣下들과 많은 관리들이 부유해진다.”³⁶⁾

결국 철저한管理와督責을 시행하지 않으면官吏들은 위로는 국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아래로는百姓의 이익을 착취해 치부하게 되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臣下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는 논리가 서게 된다. 韩非의 관점으로 볼 때,君主와百姓은 적어도臣下들에 대해 공동의 이해

34) 「備內」2, “有主名而無實，臣專法而行之，周天子是也。偏借其權勢，則上下易位矣。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也。”

35) 「外儲說右下」25, “薄疑謂趙簡主曰：「君之國中飽。」簡主欣然而喜曰：「何如焉？」對曰：「府庫空虛於上，百姓貧餓於下，然而姦吏富矣。」

36) 「外儲說右上」22, “今人君之左右，出則爲勢重，而收利於民，入則比周而蔽惡於君，內間主之情以告外，外內爲重，諸臣百吏以爲富。”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君主와 百姓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韓非는 術論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術論의 궁극적인 목적은 君權과 臣權의 대립에서 君主가 臣下를 제압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君權 강화의 논리로서 등장하는 術論은 臣下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惠民의 주체를 臣下들로부터 君主에게로 옮겨 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惠民의 주체가 君主에게 있든 臣下에게 있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사실 百姓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누가 이익을 주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君主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민심이 그 臣下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고, 그 臣下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정치적 야심을 갖고 惠民 정책을 취함으로써 왕권을 탈취하게 까지에 이르게 된다. 韩非는 이러한 메카니즘을 사회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군주의 통치 기술로서 甲術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用術의 方法

韓非의 術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韩非가 제기하는 術의 구체적인 방법도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런데 韩非의 術의 運用은 무엇보다도 信賞必罰論과 긴밀히 연관된다. 왜냐하면 韩非 術論의 최종적인 표현 형식은 바로 賞罰權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術論이 관리의 임용과 인사제도와 연관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먼저 用術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參觀을 들 수 있다. 이것은 君主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급적 많은 臣下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重臣들의 독주를 막아 여러 臣下에게 言路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고 듣는 것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君主는 진실을 듣지 못하고, 言路가 일부 臣下에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여러 臣下들의 의견이 가리워지기”³⁷⁾ 때문이다. 韩

非는 여러 번 君主의 獨斷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³⁷⁾, 이것은 정책 결정의 판단을 重臣이나 寵臣에게 일임하지 않고³⁸⁾, 여러 臣下들의 의견을 종합하기는 하되, 최종 판결권은 君主가 장악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君主가 重臣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君主가 자신의 私的 意志대로 통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韓非子』에는 君主의 私的인 통치를 경계하는 언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明主는 법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고, 자신의 임의에 따라 선발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지 자신의 임의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³⁹⁾

“법을 내버려 두고 私的인 감정으로 통치하면, 비록 많은 사람을 죽인다 해도 蕤人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⁴⁰⁾

“人主가 되어 몸소 百官을 살핀다면,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미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버려 두고, 법도를 따르고 賞罰을 살핀다.”⁴¹⁾

『孟子』에는 君主가 정책을 결정할 때 國人的 의견을 모두 청취할 것을 왕에게 권하는 부분이 있다.⁴²⁾ 孟軻의 이 발언 자

37) 「內儲說上」2, “觀聽不參，則誠不聞。聽有門戶，則臣壅塞。”

38) 「外儲說右上」21, “申子曰：‘獨視者謂明，獨聽者謂聰，能獨斷者故可以爲天下王。’”

39) 「八說」6, “治國是非，不以術斷，而決於寵人，則臣下輕君而重於寵人矣。今生殺之柄在大臣而主令得行者，未之有也。”

40) 「有度」1, “明主使法擇人，不者舉也。使法量功，不自度也。”

41) 「用人」7, “釋法制而妄怒，雖殺戮而姦人不恐。”

42) 「有度」4, “夫爲人主而身察百官，則日不足，力不給也。… 故舍己能，而因法術，審賞罰。”

43) 『孟子』「梁惠王章句下」 “王曰：「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曰：「國君進賢，如不得已，將使卑踰尊，疏踰戚，可不慎與！左右皆曰：「賢」，未可也。諸大夫皆曰：「賢」，未可也。國人皆曰：「賢」，然後察之，見賢焉然後用之。左右皆曰：「不可」，勿聽。諸大夫皆曰：「不可」，勿聽。國人皆曰：「不可」，然後察之，見不可焉然後去之。左右皆曰：「可殺」，勿聽。諸大夫皆曰：「可殺」，勿聽。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

체는 상당히 민주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에 틀림 없지만, 韓非가 이것과 배치되는, 君主의 獨斷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살펴 보면 그것 역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術을 쓰지 않고 그 臣下를 혜아리는 君主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말로써 판단하게 된다. 여러 사람의 칭찬으로써 따라서 기뻐하고, 여러 사람의 비난으로써 따라서 미워한다. 그래서 臣下된 자는 家產을 모두 동원해서 안으로는朋黨을 형성하고, 밖으로는 향리의 종족과 교류하면서 명성을 만들면서 은밀히 맺어진 약속에 따라 서로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空言과 賈祿을 서로에게 권한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이름게 해줄 것이오,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롭게 할 것이다.」라고 한다. 百姓은 그 이익을 탐하고,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면 나를 이름게 할 수 있고, 그를 노하게 하면 나를 해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百姓이 그에게로 돌아가, 그 臣下를 칭찬하는 소리가 나라에 가득차게 되어君主에게까지 들리게 된다. 君主는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를 어질다고 여긴다.”⁴⁴⁾

이상에서 당시 臣下들 중 일부는 자신의 권력과 부로써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韩非의 눈에는 이러한 臣下들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바로 유가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유가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君主의 獨斷이君主 일개인의 智力만을 동원하라는 의미는 아니

殺焉然後殺之. 故曰「國人殺之」也.”

44) 「說疑」3, “夫無數以度其臣者，必以衆人之口斷之。衆之所譽，從而說之。衆之所非，從而憎之。故爲人臣者，破家殘族，內構黨與，外接巷族，以爲譽，從陰約結以相固也，虛與爵祿而相勸也。曰：「與我者，將利之。不與我者，將害之。」衆貪其利，劫其威，彼誠喜，則能利己，誠怒，則能害己。衆歸而民留之，以譽盈於國，發聞於王，主不能理其情，因以爲賢。”

었다는 점은 다음에서 명백하다.

“一人의 힘은 大衆의 힘에 대적할 수 없고, 一人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一人의 지혜를 쓰는 것이 一國의 지혜를 쓰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지혜와 힘으로 대적하면 大衆이 이긴다. ... 下君은 자기의 능력을 이용하고, 中君은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고, 上君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용한다.”⁴⁵⁾

그러므로 韓非가 말하는 獨斷은 최종 판결권을 君主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 이르기 전의 과정에서는 近臣이나 重臣만이 아닌 여러 일반 臣下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와 있음을 감안할 때, 이것을 오로지 君主에 의한 무제한의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으로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信賞必罰權은 君主가 臣下를 제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術論의 핵심을 이룬다. 賞罰의 주요한 수단은 爵祿과 刑罰인데, 그것은 人間의 좋고 싫어하는 감정(人情)에 기초해 설치된 것이다.⁴⁶⁾ 賞罰論은 臣下와 百姓들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⁴⁷⁾, 法과 術의 통치 논리를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었다. 철저히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권한을 君主가 독점하여⁴⁸⁾, 重臣의 賞罰權 독점을 통한 君權 위협을 근원적으로 봉쇄함으로써 君主는 실제적인 통치력을 확보하게 된다.⁴⁹⁾ 여기서 君主와 臣下의 관

45) 「八經」2, “力不敵衆，智不盡物，與其用一人，不如用一國。故智力敵，則群物勝。... 下君盡己之能，中君盡人之力，上君盡人之智。”

46) 「難一」8, “設民所欲，以求其功，故爲爵祿以勸之。設民所惡，以禁其姦，故爲刑賞以威之。慶賞信而刑罰必。”

47) 「外儲說右上」10, “先王之所以使其臣民者，非爵祿則刑罰也。”

48) 「外儲說右下」1, “賞罰共，則禁令不行。”

49) 「二柄」1, “明主之所道制其臣者，二柄而已矣。二柄者，刑德也。何謂

계는 賞罰의 원칙으로 매개될 뿐이다. 이것은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의 도입을 통해 特權 貴族의 朋黨을 통한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賞罰은 利器이다. 君主는 그것을 장악하여 臣下를 제압하고, 臣下는 그것을 얻어 君主를 가린다. 그러므로 君主가 먼저 상 주려고 하는 기미를 드러내면 臣下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덕을 삼고, 君主가 벌 주려고 하는 기미를 드러내면 臣下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위력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나라의 利器는 타인에게 보이지 말라」 한 것이다.”⁵⁰⁾

“賞罰은 나라의 利器이다. 君主에게 있으면 臣下를 제압하고, 臣下에게 있으면 君主를 이긴다.”⁵¹⁾

賞罰權의 獨占에 의한 君主의 臣下 制御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한人事制度運用方法으로서, 特權 貴族의 世襲과 賣官에 의한 인사 제도의 운영에 제동을 걸어 그들로부터의 君權侵奪을 막는데 주목적이 있었다.⁵²⁾

다음으로 君主가 臣下를 제압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刑名이론이 있다. 이것은 臣下들이 비실제적인 이론을 무기 삼아 君權을 제한하려는 논리에 대응하여 君權을 유지하려는 유력한

刑德? 曰殺戮之謂刑, 廢賞之謂德. 爲人臣者, 畏誅罰而利慶賞, 故人主自用其刑德, 則群臣畏其威而歸其利矣. 故(顧:그러나)世之姦臣則不然, 所惡則能得之其主而罪之, 所愛則能得之其主而賞之. 今人主非使賞罰之威利出於己也, 聽其臣而行其賞罰, 則一國之人皆畏其臣而易其君, 歸其臣而去其君矣. ... 今世爲人臣兼刑德而用之.”

50) 「內儲說下」8, “賞罰者, 利器也. 君操之以制臣, 臣得之以壅主. 故君先見所賞, 則臣鬻之以爲德, 君先見所罰, 則臣鬻之以爲威. 故曰: 「國之利器, 不可以示人.」”

51) 「喻老」4, “賞罰者, 邦之利器也. 在君則制臣, 在臣則勝君.”

52) 「八姦」3, “父兄大臣上請爵祿於上, 而下賣之以收財利, 及以樹私黨. 故財利多者, 買官以爲貴, 有左右之交者, 請謁以成重. 功勞之臣不論, 官職之遷失謬.”

수단이다.

“形名이란 말과 일이다. 臣下가 진언하여 말하면, 君主는 그 말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고, 오로지 그 임무의 완수 여부에 따라 그 功을 평가한다. 功이 그 임무와 일치하고, 그 임무가 그의 말과 일치하면 賞을 내리고, 功이 그 임무와 일치하지 않고, 그 임무가 그의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罰을 내린다. 群臣중에 말만 크고 功이 작은 자는 罰을 내리는데, 功이 작기 때문에 罚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功이 그가 한 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罚을 내리는 것이다. 群臣중에 말은 작고 功이 큰 자도 역시 罚을 내리는데, 큰 功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功이 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의 善惡이 큰 功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罚을 내리는 것이다.”⁵³⁾

이것은 “임무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말에 따라 실제 일의 성과를 살펴 독책하여, 생사여탈권을 쥐고, 群臣들의 능력을 평가하는”⁵⁴⁾ 것으로, 名과 實은 역시 君主의 臣下 제어술로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즉 臣下의 말과 실제 업적을 비교·평가함으로써 臣下들의 虛言과 그로 인한 논리만으로 君主를 비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⁵⁵⁾

전체적으로 볼 때 法家의 術論에 대한 인상은 計欺的인 요소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一見 정치적 신뢰를 결여한 이론으로 비쳐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살펴 보면 法家만큼 정치적 신뢰를 중시하는 학파도 없는데, 信賞必罰論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53) 「二柄」2, “形名者，言與事也。爲人臣者，陳而言，君以其言授之事，專以其事責其功。功當其事，事當其言，則賞。功不當其事，事不當其言，則罰。群臣其言大而功小者罰，非罰小功也，罰功不當名也。群臣其言小而功大者亦罰，非不說於大功也，以爲不當名也，害甚於大功，故罰。”

54) 「定法」2, “術者，因任而授官，徇名而責實，措殺生之柄，果群臣之能者也。”

55) 「外儲說左上」2, “人主之聽言也，不以功用爲的，則說者多刺棘白馬之說。”

“人主의 근심은 사람을 믿는 데 있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제압당한다.”⁵⁶⁾

“작은 신뢰가 이루어지면 큰 신뢰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明主는 신뢰를 쌓는다. 賞罰이 不信되면, 禁令은 시행되지 않는다.”⁵⁷⁾

위의 두 진술은 一見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첫번째 信에 대한 언급은 大臣과 近臣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⁵⁸⁾ 衛論에서는 君主에게 臣下를 의심하고 거짓으로 시험하는 수단을 쓸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君主가 臣下를 私的으로信任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왜냐하면 君主의 특별한 臣下에 대한 私的인 信任과 그로 인한 臣下에의 權勢의 移動은 臣下가 君主를 제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君主가 臣下를 대하는 원칙은 단지 賞罰을 통한 公的인 관계로서일 뿐이다. 두번째 信의 의미는 臣과 民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信賞必罰을 의미한다. 君主와 臣下 또는 君主와 百姓의 관계는 철저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賞罰을 매개로 하여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爵祿이 功에서 생기고, 賐罰이 罪에서 생긴다는 것을 臣下가 분명히 알게 되면 臣下는 功을 세우기 위해 死力を 다하나 그것이 君主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君主가 不仁에 통하고, 臣下가 不忠에 통할 때 비로소 王노릇할 수 있다.”⁵⁹⁾

“罪로써 賐를 당하면 사람들이 君主를 원망하지 않는다.

56) 「備內」1, “人主之患，在於信人。信人則制於人。”

57) 「外儲說左上」6, “小信成，則大信立，故明主積於信。賞罰不信，則禁令不行。”

58) 「孤憤」5, “萬乘之患，大臣太重。千乘之患，左右太信。此人主之公患也。”

59) 「外儲說右下」2, “爵祿生於功，誅罰生於罪。臣明於此，則盡死力而非忠君也。君通於不仁，臣通於不忠，則可以王矣。”

그래서 (子臯에게서) 刑罰을 당한 사람이 司法 관리였던 子
臯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功으로써 상을 받으면 臣下가 君
主를 有德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⁶⁰⁾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위에 열거된 術로 언급되고 있는 信賞必罰은 君主가 가슴에 담아 두고 은밀히 臣下를 제어하는 기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賞罰의 원칙은 臣民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術의 항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賞罰을 통해서 舊貴族의 專橫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術과 法의 關係 - 嚴刑主義를 중심으로 -

法은 術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法은 術論에서 이미 언급된 賞罰만을 통해 臣民을 동시에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뿐이다.⁶¹⁾ 아울러 그 법은 분명하게 대중에게 공표된 것으로서 術이 은밀하게 행사되는 것과는 다르다. 먼저 韓非가 내세우는 法의 설치 목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이 법을 제정한 것은 不平等한 상태를 平等하게 하고, 끝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⁶²⁾

“법이 분명하면, 賢者가 不肖한 자에게서 빼앗지 못하고, 強者가 弱者를 침탈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⁶³⁾

적어도 이상의 논리에 따른다면, 법은 强者로부터 弱者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어느 계층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탐구의 여지를 남

60) 「外儲說左下」1, “以罪受誅, 人不怨上, 刑髡生子臯, 以功受賞, 臣不德君.”

61) 「外儲說左上」53, “申子曰: ‘法者, 見功而與賞, 因能而授官. 今君設法度, 而請左右之言. 此所以難行也. ’”

62) 「外儲說右下」22, “聖人之爲法也, 所以平不夷, 矯不直也.”

63) 「守道」3, “法分明, 則賢不得奪不肖, 強不得侵弱, 衆不得暴寡.”

기고 있으나, 여기서 우리는 韓非가 제출한 법 제정의 명분이 상당한 정도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韩非가 생각한 强者는 바로 大臣이나 近臣을, 상대적으로 弱者는 그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百姓과 君主를 지칭한다고 생각된다.⁶⁴⁾

형벌은 국가 통치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이 없는 사회는 없었다. 그래서 韩非는 철저히 형벌을 통치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형벌은 가족간의 관계 외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이 비록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사회를 통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⁶⁵⁾ 家族과 國家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國家를 家族의 확대로 여기는 儒家의 ‘家天下’의 통치관은 공정한 법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儒家의 親親은百姓들의 부모 자식간의 가족 윤리로서 보다는, 지배계층 내부의 특권 유지의 차원에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親親의 논리는 父子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君主와 血緣의인 관계를 맷고 있는 公族이나 貴族의 犯法이 형벌의 집행에 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정한 법 집행은 親親의 否定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정한 법 집행에 있어서의 객관성의 확보는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여 비로소 사회 발전의 필요 조건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의 공평한 적용을 주장하는 法家의 논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64) 「備內」2, “有主名而無實，臣專法而行之，周天子是也。偏借其權勢，則上下易位矣。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也。” 「飾邪」4, “夫舍常法而從私意，則臣下飾於智能。”

65) 「五蠹」4, “人之性情，莫先於父母皆見愛，而未必治也。…夫垂泣不欲刑者，仁也。然而不可不刑者，法也。” 「六反」2 “今上下之接，無父子之澤。而欲以行義禁下，則交必有郄矣”

法家의 형벌론은 역대로 그 지나친 重刑主義로 인해 심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韓非는 商鞅의 重刑少賞論는 달리 賞罰均衡論⁶⁶⁾을 견지하고 있고⁶⁷⁾,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평성은 百姓들과 臣下들을 모두 형벌의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의 형평성이다. 그러므로 韩非의 重刑主義가 어느 계층을 겨냥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重刑主義의 대상에 일반百姓이 포함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罰嚴而必'의 논리에는 重臣에 대한 형벌의 엄격한 적용을 함의하고 있음에 더 주목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일반百姓이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온 것은 法家 이전에도 여전히 있어 왔던 歷史的事實이었다. 그런데 유독 法家의 시대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들에 대한 엄격한 형벌 적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서 韩非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읊미해 볼 필요가 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나, 春秋의 기록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고 역모를 꾀하여 大姦을 이룬 자 중에 일찍이 존귀한 臣下를 따르지 않는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법령으로 대비하고, 형벌로 주눅한 자는 항상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百姓들은 절망하여 하소연할 곳 조차 없었다.”⁶⁸⁾

“현재의 行事나 都水과 같은 하급 관리들은 법령을 집

66) 「飭邪」3, “用賞過者, 失民, 用刑過者, 民不畏.”

67) 『韓非子』내에도 重刑少賞에 대한 언급은 「飭令」篇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商君書』의 「斬令」篇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韓非子』내에서는 줄곧 賞罰均衡論을 주장하다가 『商君書』를 인용하는 「飭令」篇 부분에서 갑자기 重刑少賞論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아마도 후대에 『韓非子』에 편집되어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68) 「備內」2, “上古之傳言, 春秋所記, 犯法爲逆以成大姦者, 未嘗不從尊貴之臣也. 而法令之所以備, 刑罰之所以誅, 常於貧賤. 是以其民絕望, 無所告懇.”

행할 때, 신분이 높은 자를 피하지 말아야 하며, 비천한 사람에게만 법을 적용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법집행이 타당하면, 비록 巷伯(奄宦)이라 할지라도 卿相에게 자신의 뜻을 펴며, 법집행이 타당하지 않으면, 비록 卿相 大臣이라 할지라도 百姓들에게 굽힌다.”⁶⁹⁾

여기서 韓非가 의도한 嚴刑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드러난다. 이것은 법 적용에 있어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당시 권세를 쥐고 있던 大臣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한 것이다. “옛날에 선왕은百姓과 친하려는 데 힘을 기울였고, 법을 밝히려는 일에 힘썼다. 법이 밝으면, 忠臣이 권해지고, 벌이 엄밀하면, 肆邪한 臣下가 그친다.”⁷⁰⁾에서도 형벌 적용의 엄밀성을 받은 대상은 邪臣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韩非가 주장한 嚴刑主義에는 權臣들에 대한 철저한 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⁷¹⁾

그렇다면 重刑主義는 多刑主義인가 하는 점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단 法家 형벌주의의 이상은 以刑去刑으로 표현되고 있다.⁷²⁾ 이것은 法家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계가 형벌이 없는 사회라는 이상의 표현이다.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嚴刑主義가 多刑主義를 지향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69) 「難一」8, “當世之行事·都丞之下徵令者，不辟尊貴，不就卑賤。故行之法者，雖巷伯，信（伸）乎卿相，行之而非法者，雖大吏，黜乎民萌。”

70) 「飭邪」2, “古者，先王盡力於親民，加事於明法。彼法明，則忠臣勸，罰必，則邪臣止。”

71) 「飭令」1, “法平則吏無姦。法已定矣，不以善言害法。任功則民少言，任善則民多。”「主道」3 “明君之行賞也，暖乎如時雨，百姓利其澤。其行罰也，畏乎如雷霆，神聖不能解也。故明君偷賞，無赦罪。偷賞則功臣隋其業，赦罰則姦臣易爲非。是故誠有功，則雖疏賤必賞，誠有過，則雖近愛必誅，疏賤必賞，近愛必誅，則疏賤者不怠，而近愛者不驕也。”

72) 「飭令」3, “行刑，重其刑者，輕者不至，重者不來，此謂以刑去刑。罪重而刑輕，刑輕則事生。此謂以刑致刑，其國必削。”

“景公이 晏子의 집을 지나 가다가 말하기를: 「그대의 집은 작고, 시장에 가까우니, 청컨대 그대의 집을 豫章의 園圃로 옮깁시다.」 晏子가 두번 절하고 사양하여 말하기를: 「저의 집은 가난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기다려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서 집이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景公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집이 시장과 가깝다고 하니, 요즘 물가 시세를 알고 있소?」 이 때에 景公이 형벌을 남용하고 있었다. 晏子가 대답하기를: 「刑刑을 받은 자들이 신는 신발은 비싸고, 보통 신발은 삽니다.」 景公이 묻기를: 「왜 그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벌이 많기 때문입니다.」 景公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과인이 너무 포악했구나!」 그리하여 형벌 다섯 가지를 줄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晏子가 刑刑 받은 자가 신는 신발이 비싸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임시 방편의 말로써 多刑을 그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다스림을 살피지 못한 병이다. 무릇 형의 마땅함은 많지 않고, 부당함이 적지 않았는데도, 不當함으로써 고하지 아니하고, 多刑으로써만 말하니, 衛을 모르는 병이다. ... 지금 晏子는 그 正當함의 與否는 살피지 못하고, 지나치게 형벌이 많다는 것으로써만 말하니, 또한 망령되지 않은가? 무릇 잡초를 아끼는 자는 곡식을 해체고, 盜跖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良民을 해친다. 형벌을 가볍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蟊邪한 자를 이롭게 하고 善人을 해치는 것이니, 이것은 다스림의 수단이 아니다.”⁷³⁾

위에서 韓非는 형벌 부과의 기준으로서 형벌 부과의 正當함 不當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多刑의 원인을 마땅함과 마

「難二」1, “景公適晏子曰：「子宮小，近市，請移子家豫章之圃。」晏子再拜而辭曰：「且娶家貧，待市食耳朝暮趨之，不可以遠。」景公笑曰：「子家習市，識貴賤乎？」是時景公繁於刑。晏子對曰：「踰貴而履賤。」景公曰：「何故？」對曰：「刑多也。」景公造然變色曰：「寡人其暴乎！」於是損刑五。或曰：「晏子之貴踰，非其誠也，欲便辭而止多刑也。夫刑當無多，不當無少，無以不當聞，而以太多說，無術之患也。... 今晏子不察其當否，而以太多爲說，不亦妄乎！夫惜草茅者耗禾穂，惠盜跖者傷良民。今緩刑罰，行寬惠，是利姦邪而害善人也。此非所以爲治也。」

땅하지 않음을 살피지 못하고 형벌을 집행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韓非는 자신의 法治를 仁治와 暴治의 중간으로 설정하고 있다.⁷⁴⁾ 그리고 韩非 역시 무죄한 자에 대한 형벌은 반대하고 있으며, “君主는 행할 수 있는 상을 세우고 피할 수 있는 벌을 세워야 한다.”⁷⁵⁾고 주장하고 있다.

“죄가 없는 자를 重刑에 처하는 것은 百姓들이 원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百姓들이 원망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⁷⁶⁾

“誅罰이 이미 不當한데도 그것으로써 마음을 다 한다면, 이것은 천하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⁷⁷⁾

“형벌이 지나치면百姓이 두려워하지 않는다.”⁷⁸⁾

여기에서도 重刑主義는 多刑主義가 아닌 嚴刑主義이고, 그 嚴刑은 주로 大臣들을 겨냥하고서 한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그래서 韩非의 重刑主義는, 韩非가 생각한 犯法의 주체가 누구였는가가 우선 파악되어야 그것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韩非가 주장한 嚴刑主義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다.百姓들 역시 犯法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韓非子』내에 언급되어 있는 犯法의 주체들은 주로 君權을 제압하고 있는 특권귀족들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74) 「八說」5, “仁者，慈惠而輕財者也。暴者，心毅而易誅者也。慈惠則不忍，輕財則好與。心毅則憎心見於下，易誅則妄殺加於人。不忍則罰多宥赦，好與則賞多無功，憎心見則下怨其上。妄誅則民將背叛。故仁者在位，下肆而輕犯法禁，偷幸而望於上。暴人在位，則法令妄而臣主乖，民怨而亂心生。故曰仁暴者皆亡國也。”

75) 「用人」3, “明主立可爲之賞，設可避之罰。”

76) 「難一」8, “重不辜，民所以起怨者也。民怨則國危。”

77) 「難四」3, “誅既不當，而以盡爲心，是與天下爲讐也。”

78) 「飭邪」3, “用刑過者，民不畏。”

79) 「六反」4, “上設重刑者而姦盡止矣。姦盡止，則此奚傷於民也？”

4. 結論

韓非의 사상은 그 專制的인 성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대로 法家를 비판한 주체가 臣權의 강화를 기반으로 했던 儒家였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儒家의 이론은 漢 이후에 정식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漢 이후의 중국의 정치 질서가 기본적으로 臣權의 강화에 기초를 둔 유가적 지주·관료제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⁸⁰⁾ 또한 法家의 중앙집권적 국가의 수립 요구는 국가 통일을 지향한다기 보다는 君主에로의 권력 집중이 일차적인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폭력적 침략주의로만 매도될 수 없다.⁸¹⁾

그리고 法家의 이론을 기초로 秦은 戰國을 統一할 수 있었지만, 韓非 본래의 취지였던 賞罰均衡論을 취했다기 보다는 商鞅의 重刑少賞論을 취하여 철저히 韩非 路線의 법사상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秦의 멸망 원인을 法家 이론의 자체적 결합으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본인은 국력을 지나치게 소모한 대토목사업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法家는 국력의 축적을 목표로 부국강병을 주장했는데, 국력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대토목공사를 지지했을까 하는 점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며, 『韓非子』내에는 과도한 부역 동원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徭役이 많으면,百姓이 괴롭다.百姓이 괴로우면 臣下의 권세가 일어난다. 臣下의 권세가 귀해지면, 다시 부역을 감면해 준다. 부역을 감면해 주면 貴人은 부유해진다.**

80) 宋榮培, 『중국사회사상사』, pp.172-176.

81) 「飭邪」3, “明於治之數, 則國雖小, 富. 賞罰敬信, 民雖寡, 強.” 「內儲說上」29 “法不立而誅不必, 雖有十左氏, 無益也. 法立而必, 雖失十左氏, 無害也.” (*左氏: 都邑名)

百姓을 괴롭게 해서 貴人을 부유하게 하고 勢를 일으켜 주어 臣下를 돋게 되니, 천하의 長期的인 利益이 아니다. 그러므로 요역이 적으면 百姓이 편안하고, 百姓이 편안하면 臣下들에게 무거운 권세가 없게 된다. 臣下들에게 무거운 권세가 없으면 그들의 權勢는 사라지고, 그들의 권세가 없어지면 德은 君主에게 있게 된다.”⁸²⁾

그리고 韓非의 이론으로 볼 때에도, 秦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秦의 멸망을 재촉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宦官 趙高에 의한 專橫때문이었음을 『史記』의 「李斯列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君主가 臣下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臣下에 의한 君權 침해를 용납한 결과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戰國시대의 法家는 일시적인 君主權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통일하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전 중국 역사를 통해 볼 때에, 法家의 이상대로 法이 臣과 民의 구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정치 질서가 성립한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君主權의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화의 결과는 유교적 지주-관료계층의 입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교적 관료-지주 계층의百姓에 대한 통치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韓非의 術論은 君權을 약화시키는 大臣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重罰主義를 嚴刑主義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그리고 法家의 통치론은 君主가 臣下와 百姓들에게 객관적인 통치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 동시에, 法이라는 매개를 통해 君主의恣意的 통치 행위에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法家 이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82) 「備內」2, “徭役多則民苦，民苦則權勢起。權勢貴則復除重，復除重則貴人富。苦民以貴人富，起勢以藉人臣，非天下長利也。故曰徭役少則民安。民安則下無重權，下無重權則勢滅，權勢滅則德在上矣。”

參考文獻

< 原典類 >

『論語』.

『孟子』.

『史記』, 北京: 中華書國.

『禮記』.

邵增樺, 『韓非子今註今釋』,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 76年.

< 研究書類 >

Joseph Needham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堯 譯, 『中國의 科學
과 文明』 2, 서울: 乙酉文化社, 1990.

孔實明, 『韓非思想新探』, 湖北人民出版社, 1990.

郭沫若 著, 조성율 譯, 『中國古代思想史』(原題:十批判書), 서울:
도서출판까치, 1991.

牟宗三 著, 鄭仁在·鄭炳碩 譯, 『中國哲學特講』(原題: 中國哲學十
九講), 서울: 螢雪出版社, 1991.

傅築夫, 『中國經濟史論叢』,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1985.

謝雲飛, 『韓非子析論』, 臺北: 東大圖書公司, 1989.

徐連達·吳浩坤·趙克堯 著, 중국사연구회 譯, 『中國通史』, 서울:
청년사, 1990.

宋榮培, 『中國社會思想史』, 서울: 한길사, 1986.

俞榮根, 『儒家法思想通論』, 廣西人民出版社, 1992.

李篤才, 『中國古代人物法律思想論點注釋』, 天津古籍出版社, 1989.

任繼愈 著, 이문주·최일범 譯, 『중국철학사1』, 서울: 청년사,
1990.

張素貞, 『韓非子難篇研究』, 臺灣: 學生書局, 民國72年.

張素貞, 『韓非子思想體系』,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74年.

張晉藩 主編, 『中國法制史』, 北京: 群衆出版社, 1982.

- 陳奇猷·張覺,『韓非子導讀』,四川巴蜀書社,1990.
- 馮契,『中國古代哲學的邏輯發展』上冊,上海人民出版社,1987.
- 胡適 著, 송궁섭·함홍근·민두기 譯, 中國古代哲學史(原題: 中國哲學大綱),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論文類 >

- 文錫胤,「韓非子의 法思想」,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李東哲,「韓非子‘解老’·‘喻老’篇의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